

## 淸의 朝鮮使行人選과 ‘大清帝國體制’\*

丘凡眞

(서울대 동양사학과)

### 1. 序論

明·淸과 朝鮮의 약 500년에 걸친 외교 관계는 전통시대 韓-中 관계의 ‘典型’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全海宗 1970-1: 50-54), 보통 ‘중국적 세계 질서’(Chinese World Order) 또는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로 이해되는<sup>1)</sup> 전통시대 東아시아 국제 관계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朝鮮과 明·淸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으며, 특히 조선이 파견한 使行人(‘朝貢’의 측면)에 대해서는 燕行錄 같은 조선 측의 방대한 기록을 분석한 연구가 일일이 열거하기 곤란할 정도로 많이 이루어졌다(고구려연구재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KRF-2006-332-A00028). 본고의 심사에 참여한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하며, 분량 관계로 본고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지적 사항들은 앞으로의 연구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1) Fairbank 1968은 이러한 이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주 제 어: 淸의 朝鮮使行人, 칙사의 인선, 旗人 칙사, 조공체제, 淸의 朝鮮 인식  
**Qing Envoys to Korea, Appointment of Qing Envoys, Bannerman Envoys, Qing Tribute System, Qing Perception of Korea**

단 2004: 82-149 참조). 그러나 明·淸이 조선에 파견한 使臣, 즉 勅使(‘冊封’의 측면)에 대한 연구는 결코 활발했다고 할 수 없다. ‘冊封’과 ‘朝貢’이 동일한 역사 현상의 표리를 형성하므로 전통시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冊封-朝貢 體制’라 불러야 마땅하다면(김한규 2000: 284), ‘책봉’과 ‘조공’ 가운데 후자에 치중했던 종래의 연구는 조선과 明·淸의 관계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필자는 본고를 통해서 淸이 조선에 파견했던 勅使의 人選 문제를 고찰해 보려 한다. 管見에 한하는 한, 淸의 朝鮮使行人選 문제를 專論한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었던 듯하다. 사실 연구 주제의 범위를 淸의 使行 문제 전반으로 확대한다 하더라도 선행 연구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 같은 연구의 부진은 물론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이런 주제에까지 관심을 기울일 여유를 갖지 못했던 데에서 기인한 바가 가장 컸을 터이지만, 역설적이게도 淸의 使行에 대한 수준 높은 선행 연구(全海宗 1970-2)를 뛰어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게다가 淸이 조선에 파견한 칙사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료가 의외로 적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淸의 칙사가 사행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경우는 매우 희소할 뿐만 아니라, 칙사의 활동을 전하는 조선 측의 기록도 접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sup>2)</sup>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 阿克敦이 남긴 조선 방문 기록을 분석하여 18세기 朝-淸 관계의 특징을 규명한 연구(홍성구 2005), 19세기 전반 조선을 방문했던 두 칙사(柏葭과 花沙納)의 기록을 분석한 연구 등이 나온 바 있다(俞春根 1994; 구범진 2004). 또한 중국에서는 朝-淸의 사신 왕래를 다각도에서 해명한 종합적인 연구서가 출간되기도 하였다(劉爲 2002).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본고의 주제인 淸의 朝鮮使行人選 문제에 주목한 연구는 아직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은 듯하다. 필자는 淸이 조선에 파견

2) 殷夢霞·于浩 選編, □□使朝鮮錄□□에 수록된 朝鮮使行人選 기록만 놓고 보면, 明인이 남긴 것은 9種, 淸인이 남긴 것은 6種이다. 하지만 후자 가운데 4종은 19세기의 使行人選 기록이고, 18세기까지의 기록은 阿克敦의 □□東游集□□과 □□奉使圖□□뿐이다.

했던 칙사들의 관직과 이름이 기록된 □□同文彙考□□ 補編 卷9의 「詔勅錄」을 검토해 보았는데,<sup>3)</sup> 그 결과 淸이 조선사행의 인선에서 漢人 관료를 배제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준수하였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sup>4)</sup> 본고는 「詔勅錄」에 기재된 칙사 명단과 기타의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이 가설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지 따져보는 것을 일차적 과제로 삼는다. 만약 필자의 가설이 과연 역사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본고의 고찰 결과는 通時的으로 朝-淸 관계와는 구분되는 朝-淸 관계의 역사적 특징을 밝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고, 共時的으로 보자면 淸이 주도한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의 위상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2. 朝鮮使行人選의 定例와 實態

□□同文彙考□□의 「詔勅錄」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sup>5)</sup> 入關 이후 光緒 7년까지

- 
- 3) 본고에서는 1978년 國史編纂委員會가 韓國史料叢書의 일부로 영인·간행한 □□同文彙考□□를 이용하였다.
- 4) 본고에서 말하는 ‘漢人’은 淸代 民籍에 등재되었던 ‘民人’을 가리킨다. 반면에 八旗의 호적인 旗籍에 등재되었던 자는 ‘旗人’이라 부를 것이다. 또한 ‘旗人’은 보통 ‘滿洲(人)’로 통칭되기도 하므로 본고에서도 양자를 혼용할 것이다. 八旗와 ‘旗人’, 그리고 ‘旗人’과 ‘滿洲’의 관계 등에 관해서는, Rawski 1998; Rhoads 2000; Elliot 2001; Crossley 2002; Elliot 2006 등을 참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旗人 가운데 八旗 漢軍에 속하는 자들은 설사 혈통적으로 漢人이었다고 하더라도 民人이 아닌 旗人이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淸의 중국 정복은 물론이거니와 17세기 초·중반의 朝-淸 관계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던 洪承疇 같은 ‘貳臣’들은(한명기 2005), 혈통적으로는 漢人이었으나 대개 八旗 漢軍 등에 편입된 旗人이었다. 이들은 淸의 入關 이후에도 여전히 旗籍에 속하는 旗人으로서 일반 漢人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존재였다.
- 5) 「詔勅錄」은 엄밀히 말하자면 별개의 使行일지라도 동시에 입국한 경우라면 하나의 使行으로 취급하여 기록하였다. 예컨대 <표 1>의 ‘S06-1’은 仁祖에 대한 諭祭使行과 孝宗에 대한 冊封使行을 함께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詔勅錄」을 기준으로 할

4 인문논총 제59집 (2008)

지 淸이 조선에 파견한 사행은 모두 150회(연인원 349명)였다.<sup>6)</sup> 그런데 이 150회의 조선사행 전체에 대하여 모종의 인선 원칙이 존재하였는지, 또 존재하였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명시하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冊封使行에 한해서 보자면 乾隆 이후의 會典에서 인선의 원칙에 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乾隆 〇〇欽定大清會典〇〇(乾隆 29년 완성)을 보면,

朝鮮國王은 王妃와 王을 함께 책봉한다. 아들이 장성하면 世子로 책봉해 줄 것을 請한다. 모두 三品 이상의 관원이 正使와 副使로 充任된다.<sup>7)</sup>

고 하였으니, 늦어도 乾隆 중기에는 3品 이상의 고급 관원을 조선에 책봉사로 파견한다는 인선 원칙이 확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乾隆 〇〇欽定大清會典則例〇〇는,

(A) 順治 16년에 칙사를 보내어 詔勅을 갖고 가서 朝鮮國 世子 李柵을 朝鮮國王으로 冊封하였다. 이 해에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朝鮮國王을 冊封하러 갈 때에는, 內大臣, 散秩大臣, 一等侍衛, 滿洲 內閣學士, 翰林院掌院學士, 禮部侍郎 등의 명단을 작성하여 [올린 뒤] 삼가 황제께서 正使와 副使 각 한 사람씩 낙점하시기를 기다린다.<sup>8)</sup>

---

경우 사행의 파견 횟수는 실제보다 적게 된다.

6) 「詔勅錄」에 따르면, 淸의 조선에 대한 칙사 파견은, 順治 연간에 39회, 康熙 연간에 54회, 雍正 연간에 14회, 乾隆 연간에 18회, 嘉慶 연간에 8회, 道光 연간에 10회, 咸豐 연간에 3회, 同治 연간에 2회, 光緒 연간에 4회 등 도합 152회였다(〇〇同文彙考〇〇 補編 卷9 「詔勅錄」, 4b-49b쪽). 그러나 본고의 관심사는 칙사의 旗人 출신 여부에 있으므로, 淸의 모든 관원이 旗人이었던 입관 전의 칙사 파견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順治 元年이지만 입관 전에 있었던 2회의 칙사 파견은 논외로 처리하였다.

7) 乾隆 〇〇欽定大清會典〇〇 卷56, 2a쪽.

8) 乾隆 〇〇欽定大清會典則例〇〇 卷93, 3a쪽.

고 하여, 앞의 인용문에 보이는 “三品 이상의 관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즉, 順治 16년에 淸은 顯宗을 책봉하는 칙사를 조선에 파견하였고, 같은 해에 “內大臣, 散秩大臣, 一等侍衛, 滿洲 內閣學士, 翰林院掌院學士, 禮部侍郎” 중에서 정사와 부사를 한 명씩 고른다는 인선 원칙을 세웠다는 것이다. 열거된 여섯 관직 중에서 內大臣(종1품), 散秩大臣(종2품), 一等侍衛(정3품) 등은 侍衛處 소속의 八旗 武職이었으므로,<sup>9)</sup> 이들 관직에 재직 중인 자로서 책봉사로 파견되는 관원은 모두 旗人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滿洲 內閣學士” 이하는 “滿洲”가 “內閣學士”만을 수식하는지, 아니면 세 관직 모두를 수식하는지가 분명치 않지만, 嘉慶 □□大清會典□□(嘉慶 23년 완성)의 다음 기사를 보면 “滿洲”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B) 무릇 冊封使는 모두 [황제의] 特簡을 받든다. 朝鮮[으로 가는] 正使는 內大臣, 散秩大臣, 一等侍衛의 관직과 이름의 명단을 작성하고, 副使는 內閣의 滿洲 學士, 翰林院의 滿洲 掌院學士, 禮部의 滿洲 侍郎의 관직과 이름의 명단을 작성하여 황제께 파견하실 것을 奏請한다.<sup>10)</sup>

여기서 “滿洲”는 “內閣學士, 翰林院掌院學士, 禮部侍郎”의 세 관직을 모두 수식하고 있다. 종2품의 문관으로서 禮部侍郎의 직함을 겸하는 內閣學士의 정원은 모두 10인으로, 그 가운데 滿洲가 6인, 漢人이 4인이었다.<sup>11)</sup> 따라서 (B)의 “內閣滿洲學士”란 10인의 內閣學士 중에서 滿洲 6인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역시 종2품의 문관인 翰林院掌院學士의 정원도 전체 2인에 滿洲가 1인, 漢人이 1인이었으므로,<sup>12)</sup> (B)의 “翰林院滿洲掌院學士”는 “內閣滿洲學士”의 경우와 같은 의미가 된다. 한편 정2품의 문관인 禮部侍郎은 滿·漢이 同數로서 滿洲가 2인, 漢人이 2인이었으므로,<sup>13)</sup> “禮部滿洲侍郎”

9) □□淸史稿□□ 卷117, 3364쪽.

10) 嘉慶 □□欽定大清會典□□ 卷31, 13b쪽.

11) □□淸史稿□□ 卷114, 3267쪽.

12) □□淸史稿□□ 卷115, 3309쪽.

이란 4인의 禮部侍郎 가운데 滿洲 2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A)와 (B)는 모두 조선에 파견하는 책봉사의 인선 대상을 고급의 滿洲(=旗人) 관원으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곧 漢人 출신의 관원이 조선에 파견되는 책봉사 인선에서 배제되었다는 뜻이므로, 서론에서 언급한 필자의 가설을 확인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A)와 (B)의 내용 검토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A)와 (B)는 책봉사행의 인선에만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의 책봉사행 인선에서조차 (A), (B)의 원칙이 그대로 준수되었으리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sup>14)</sup>

그렇다면 (A)와 (B)의 인선 원칙은 실제의 인선에서 얼마나 준수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책봉사행 이외의 인선에 대한 사료의 ‘침묵’을 곧바로 칙사 일반의 인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원칙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실제로 파견된 책봉사의 인선이 과연 정례를 얼마나 충실히 준수하였는지는 역대의 칙사 중에서 책봉사만을 가려서 그 정사와 부사의 출신을 확인하면 될 터이지만, 본고에서는 책봉사뿐만 아니라 「詔勅錄」에 기록된 칙사 전체를 대상으로 그들의 旗人 출신 여부를 확인해 보기로 하겠다.

부록의 <표 1>~<표 11>은 입관 이후 150회에 걸쳐 파견된 칙사의

13) □□清史稿□□ 卷114, 3279쪽.

14) (A)와 (B) 자체에 대해서도 그 내용상의 차이(정사와 부사 인선의 구분 여부) 및 각각의 성립 시점 등에 대해서 더 깊이 천착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예컨대 (A)의 인선 원칙이 順治 16년에 수립되었다는 會典의 기사는 그대로 따르기 곤란하다. 실제 順治 16년의 책봉사 인선이 (A)의 원칙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여유는 없기 때문에, 필자가 여러 관련 사료를 검토한 도달한 결론만을 언급해 두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왕 책봉사의 인선은 肅宗의 책봉을 위한 康熙 14년의 인선을 계기로 (A)의 정례로 발전한 듯하다. 한편 정사와 부사의 인선을 구분하는 (B)의 정례는 乾隆 會典의 편찬 이후에 성립된 듯하며, (B)와 동일한 내용의 정례가 인용된 □□同文彙考□□의 기록(原奏, □□同文彙考□□原編 卷4, 6a)을 통해서 그 하한선을 乾隆 41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관직과 이름을 『詔勅錄』의 기재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칙사의 旗人 출신 여부를 판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명단에 수록된 칙사의 이름과 淸 쪽의 관련 자료를 대조하여 旗人 출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확인 작업을 위하여 본고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는 □□清代職官年表□□(이하 □□職官年表□□)이다(錢實甫, 1980). 이 작업에는 여러 가지 난점이 존재하긴 하지만<sup>15)</sup> □□同文彙考□□의 『詔勅錄』 이외 부분에서 단편적으로 발견되는 칙사의 관직 및 이름을 알려주는 기록이나 淸의 實錄과 같은 관련 기록을 면밀히 대조하고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칙사에 대해서 적어도 기인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sup>16)</sup> 먼저 <표 1>~<표 11>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칙사의 旗人 출신 여부를 판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① 『詔勅錄』에 수록된 칙사의 관직이 漢人 관료에게는 개방되지 않았던 관직(“滿缺”)인 경우-예컨대 內大臣, 散秩大臣, 一等侍衛 등과 같은 八旗 武職-에는 칙사의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할 필요 없이 그가 旗人이었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표에서 ‘관직’ 오른쪽의 ‘판정’에 “a”를 기입하였다. 한편, 『詔勅錄』에 기재된 관직을 보면 만주어 관명을 한자로 轉寫한 경우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

15) <표 1>의 ‘S02-3’처럼 『詔勅錄』에 이름의 첫 글자만 기재된 경우는 그 신원을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더구나 해당 인물이 □□職官年表□□의 등재 대상이 아닌 하급 관원인 경우라면 확인 작업은 매우 곤란해진다. 또한 ‘S01-3’의 경우처럼 실사 이름이 확인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관직이 □□職官年表□□의 수록 대상이 아니라면 신원 추적이 어렵게 된다. 더욱이 『詔勅錄』에 수록된 관직과 이름을 다른 기록과 비교해 보면 한자 표기가 다른 경우도 있고,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오류인 경우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16) 『詔勅錄』에 기재된 칙사의 관직과 이름을 □□同文彙考□□에 수록된 기타 문서나 淸의 實錄 사료 등에 기재된 것과 대조해 보면 적잖은 차이가 발견된다. 이는 대개 만주어를 한자로 전사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인데, 본고에서는 칙사의 旗人 출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작업에만 집중하고 이런 차이는 논외로 하였다.

칙사를 旗人으로 간주하고 ‘판정’에 “a-”를 기입하였다. 그리고 표에서 “a”와 “a-”로 판정한 경우는 표 아래(“※” 부분)에 그에 관한 설명을 덧붙였다.

② 『詔勅錄』의 관직이 滿·漢 모두에 개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職官年表□□의 수록 대상이었던 경우에는, 먼저 『詔勅錄』의 이름을 □□職官年表□□의 해당 연도 해당 관직에 제임 중인 자의 이름과 대조해 보았다. □□職官年表□□는 滿·漢을 병용하는 관직에 대하여 “滿洲”와 “漢人”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만약 해당 관직의 “滿洲” 부분에서 칙사의 이름이 확인된다면 그 칙사는 旗人이었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표의 ‘판정’에 “b”를 기입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를 밝히기 위하여, <표 1>~<표 8>의 경우에는 “b1”, “b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표의 아래에 해당 이름이 확인되는 □□職官年表□□의 쪽수를 명시하였다. 예컨대 “職246”은 “□□職官年表□□, 246쪽”을 의미한다. <표 9>와 <표 10>의 경우는 표의 ‘판정’ 부분에 해당 이름이 확인되는 □□職官年表□□의 쪽수를 밝혀 두었다. 예컨대 “b-1012”는 □□職官年表□□의 1012쪽에서 해당 이름이 확인된다는 의미이다.

③ 『詔勅錄』의 관직이 □□職官年表□□의 수록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①과 ②의 방법으로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詔勅錄』의 기록에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詔勅錄』에 이름의 첫 글자만 표기된 경우, □□職官年表□□에서 『詔勅錄』의 이름 첫 글자와 일치하는 자가 해당 연도 해당 관직의 “滿洲” 명단에서 확인된다면 그를 旗人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표의 ‘판정’에 “c”를 기입하고, ②와 같은 방식으로 표의 하단에 근거를 밝혀 두었다.

④ 칙사의 관직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이름만으로도 旗人이었음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즉 『詔勅錄』의 이름에 “宗室”이나 “覺羅”가 포함된 경우는 淸 皇室의 同族이므로 칙사가 旗人이었다고 판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표에서 이름 오른쪽의 ‘판정’에 “d”를 기입하였다.<sup>17)</sup>

- ⑤ “a”~“d”에 해당하지 않지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칙사가 旗人이었다고 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표에서 이름 오른쪽의 ‘관정’에 “e”를 기입하였고, ②와 ③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표의 하단에 그 근거를 밝혔다.
- ⑥ “a”~“e”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칙사는 표에서 이름 오른쪽의 ‘관정’에 “x”를 기입하고, 표의 하단에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
- ⑦ <표 1>~<표 10>에는 정사와 부사만이 등재되었는데, 康熙 초기까지는 三使 이하의 칙사가 파견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표 11>에 이들의 관직과 이름을 열거하고, 표 아래에서 이들의 旗人 출신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입관 이후 淸이 조선에 파견한 칙사의 旗人 출신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칙사들은 ①~⑤의 방법을 통해서 旗人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칙사가 旗人 출신이었다고 단정해 버리긴 곤란하다 할 수 있는 ⑥의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표 1>에 4명, <표 2>에 5명, <표 3>에 2명, <표 4>에 4명, <표 5>에 2명, <표 7>에 1명, <표 11>에 5명 등, 모두 합해서 23명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은 그 이름만 보아도 漢人이 아니었음이 거의 확실하며, 출신이 불확실한 경우는 <표 1>의 “x4”, <표 2>의 “x1”, <표 3>의 “x2”, <표 4>의 “x2”와 “x4”, <표 5>의 “x1”, <표 11>의 “方”과 “柯” 등 기껏해야 8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본고에서 검토한 칙사의 2.3%에 불과한 숫자이다.

사실 이 8명도 그 이름의 첫 글자가 반드시 漢人 관료의 姓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칙사를 제외하고 淸이 조선에 파견했던 유일한 정식 관원이었던 通官 역시 漢人 출신이 배제되는 “滿缺”이었다는 사실을 아울러 고려한다면,<sup>18)</sup> 이 8명 역시 旗人 출신으로 보아도 잘못은 아닐 듯하다. 그렇

17) “宗室”과 “覺羅”에 대해서는, Rawski 1998: 72-75 참조.

다면 淸이 조선에 파견한 칙사는 사실상 100% 旗人으로 구성되었다는 결론을 내려도 무방할 듯하다.

지금까지 입관 이후 淸이 파견한 모든 칙사의 인선 실태를 검토해 본 결과, 책봉사 인선에 관한 정례의 漢人을 배제한다는 원칙이 놀라울 정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모든 칙사의 인선에 적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선 대상이 되는 관직에 관한 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표 1>~<표 10>의 ‘정례’에 표기된 “A”, “B”, “X” 등에 주목해 보자. 이들은 책봉사를 포함한 모든 칙사의 관직과 (A), (B)의 관계를 밝힌 것으로, “A”는 (A)와, “B”는 (B)와 일치하는 경우를, “X”는 정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표 1>~<표 3>에서는 칙사의 관직이 (A), (B)와 일치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다. <표 4>에서는 “A”가 4건 나타났고, <표 5>에서는 “A”가 5건 보이는 한편, ‘K23-1’의 사례에서 “B”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다. <표 6>에서는 “A”가 6건, “B”가 3건으로 늘어났다. 옹정 연간의 칙사 인선을 보여주는 <표 7>에서는 “A”(4건) 및 “B”(3건)의 빈도가 처음으로

18) 淸이 조선에 파견하던 通官, 곧 朝鮮通官은 禮部 會同四譯館 소속의 관직이었다. 乾隆 23년 朝鮮通官의 정원 조정과 관련된 實錄 기사를 보면, “朝鮮通官은 康熙 13년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정한 바 있습니다. [즉,] 上三旗에서 6品 3員, 7品 2員, 8品 1員, 下五旗에서 6品 3員, 7品 2員, 8品 1員 등이었습니다. 上三旗는 內務府에서 帶領하여 引見하였고, 下五旗는 年貢을 따져서 승진시켰습니다.”(□□淸實錄 高宗純皇帝實錄□□ 卷560, 乾隆 23年 4月 戊辰, 103-104쪽. 이하 □□淸實錄□□은 “연호+실록”의 방식, 즉 □□乾隆實錄□□ 등으로 약칭)라고 하여, 朝鮮通官을 八旗에서 선발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同文彙考□□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通官의 이름은 漢人의 성명과 거리가 멀다. 몇몇 사례만 예로 들자면, ‘Q49-1’의 사행에서는 “六品通官 烏林布寶樹, 七品通官 四格伍什泰, 無品級通事 太平保” 등이(「盛京禮部知會通官派送咨」, □□同文彙考□□ 原編 卷4, 26a쪽), ‘J05-1’의 사행에서는 “一等六品通官 倭克精額太平保, 二等七品通官 雙林, 三等八品通官 常山, 無品級通事 吉爾通阿” 등이(「禮部知會勅使起身咨」, □□同文彙考□□ 原編續 封典一, 13a-13b쪽), ‘J08-1’의 사행에서는 “六品通官 倭克經額, 七品通官 雙林, 八品通官 景平繼文寶德” 등이 기록에 보인다(「禮部知會派遣通官咨」, □□同文彙考□□ 原編續 封典一, 21a쪽).

50%에 도달하고 있으며, <표 8>에서는 단 두 건(‘Q49-1’과 ‘Q51-1’)을 제외한 모든 인선이 “A”(6건) 또는 “B”(10건)에 해당하였다. <표 9>에서 嘉慶 연간의 칙사 인선만을 보면 8건 모두가 “B”에 해당하고 있다. 이렇듯 칙사의 관직이 (A), (B)와 일치하는 경우는 康熙 연간까지만 해도 극히 일부에 국한된 현상이었으나, 雍正 연간에는 50%가 일치하였고, 乾隆 연간에 이르러서는 전체 18건 가운데 16건이 일치하였다. 그리고 嘉慶 연간에는 모든 칙사의 인선이 (B)와 일치하였다.

嘉慶 연간까지의 칙사 인선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변화의 원인으로는, 먼저 칙사 파견의 성격 변화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후술하듯이 초기에는 양국간에 발생한 외교 실무를 해결하기 위한 칙사 파견이 많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관품이 낮은 하급 관원이 칙사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淸의 조선에 대한 칙사 파견은 책봉을 비롯한 의례적인 성격의 사행에 국한되었다.

다음으로 칙사 파견의 성격이 변화하는 가운데 책봉사 인선에 관한 정례가 모든 칙사의 인선에게까지 확대 적용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광서 7년의 칙사 파견과 관련이 있는 □□同文彙考□□의 다음 기록은 그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C) 살피건대, 定例를 보면, “遺詔를 朝鮮國에 頒發할 때에는, 마땅히 內大臣, 散秩大臣, 內閣學士, 各部院 侍郎 등의 관직과 이름을 [열거한] 명단을 작성하여 황제께 正使와 副使를 각 1명씩 골라 파견하실 것을 奏請한다. ... ”고 하였습니다.<sup>19)</sup>

光緒 7년의 칙사는 皇太后的 사망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C)는 당시 칙사의 인선이 정례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알려 주고 있다. 책봉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례를 의식한 칙사의 인선이 이루어졌던 것이니, 책봉사 인선의 원칙이 칙사 일반의 인선에 확대 적용되는 경향이 있었음을 잘 보여 준

19) 「原奏」, □□同文彙考□□ 原編續 陳慰二, 23a쪽.

다고 하겠다.

그런데, (C)에 등장하는 정례가 (B)는 물론이거니와 (A)와도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B)와 비교하자면, 첫째로 정사와 부사의 인선 대상을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로 (B)에 열거된 여섯 관직 가운데 內大臣, 散秩大臣, 內閣學士 등의 세 관직만 일치하고 나머지 세 관직은 “各部院侍郎”으로 대체되었다. 셋째, 內閣學士와 各部院侍郎의 滿·漢 여부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C)보다 시기가 뒤지는 光緒 〇〇欽定大清會典〇〇(光緒 25년 완성)에도 (B)가 정례로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 적어도 光緒 초년에는 (B)와 다른 정례가 실제의 칙사 인선에 적용되고 있었던 셈인데, 칙사 인선의 정례에 이런 변화가 발생한 시기는 언제일까? 또한 (C)는 칙사 인선의 실태와 얼마나 부합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같은 변화로 인해 그 동안 인선에서 배제되었던 漢人이 칙사로 파견된 적은 없었을까?

이런 문제는 <표 9>와 <표 10>을 비교함으로써 그 해답을 쉽사리 구할 수가 있다. <표 9>를 보면, 道光 연간에 이르러 道光 11년과 道光 13년의 칙사 인선이 (B)와 어긋나는 모습을 보였고, <표 10>에서는 道光 24년 이후 光緒 元年의 단 한 차례(G01-2)를 제외하면 (B)와 합치하는 경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표 10>에서 ‘D29-1’과 ‘T03-1’은 국왕(철종과 고종) 책봉사였으며, 왕비 책봉사도 세 차례(D25-1, X02-1, T05-1) 있었다. 〇〇同文彙考〇〇에 수록된 咸豐 2년의 왕비 책봉사 인선 관련 기록에 의하면, (B)로부터의 이탈은 道光 25년 이후 인선 대상 관원 명단에 등재되지 않는 자를 칙사로 고르는 황제의 “特旨”가 거듭되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었다. 21) 말하자면 황제가 정례에 중대한 수정을 가했던 셈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C)가 (B)를 대체하여 칙사 인선의 원칙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던 것도 아닌 듯하다. <표 10>을 보면 (C)에 열거되지 않은

20) 光緒 〇〇欽定大清會典〇〇 卷39, 377쪽.

21) 「原奏」, 〇〇同文彙考〇〇 原編續 封典二, 30b-31a쪽.

관직인 副都統이 여덟 차례나 副使로 파견되었음이 확인된다. (C)와 부합하는 칙사 인선은 ‘D29-1’, ‘T05-1’, ‘G01-1’, ‘G01-2’, ‘G07-1’ 등 다섯 차례에 그쳤을 따름이다.

한편, 道光 24년 이후 정사의 관직을 보면, 侍衛處 소속의 무직 관원 가운데 정사를 선발한다는 (B)와 달리, 13차례의 사행 가운데 12차례의 사행에서 六部, 理藩院, 盛京五部 등의 侍郎이 정사로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문직 관원이 부사 인선의 대상이었던 (B)와는 반대로 10차례의 사행에서 무직 관원이 부사로 파견되었다. 따라서 道光 후기부터는 (B)의 무직 정사, 문직 부사 인선과는 정반대의 인선이 대세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다.

요컨대 칙사의 관직에 있어서는 道光 연간부터 乾隆 연간에 확립된 정례가 준수되지 않았고, 급기야는 칙사 인선에 관한 정례가 (C)의 형태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칙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 칙사가 旗人 출신의 고급 관원이었으며 漢人은 여전히 칙사 인선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 3. 琉球·베트남에 파견한 勅使의 人選

지금까지의 고찰 결과를 좀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淸은 조선에 파견하는 칙사를 고급 관원(1품~3품) 가운데에서 선발하였다. ㉡ 淸은 조선에 파견하는 칙사의 인선에서 漢人 관료를 배제하였다. 이하에서는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

서론에서 淸의 조선사행 인선에 관한 필자의 가설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경우, 通時的으로 보자면 朝-明 관계와는 구분되는 朝-淸 관계의 역사적 특징을 밝히는 데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전망한 바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漢族 왕조인 明과 달리 淸은 만주족이 세운 왕조였다. 보통 淸의 중국 지배가 明의 典章制度를 대체로 계승한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明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의 판도를 확보한 淸이 주도했던 17-19세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明의 그것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었다. 몽골, 신강, 티베트 등으로 구성되는 藩部의 성립을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다. 淸의 국가 기구 가운데 이 藩部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했던 것은 理藩院이었는데, 이 기구는 漢人 관료에게는 접근이 봉쇄되어 있었다. 반면에 조선을 포함하여 주로 중국의 동남쪽에 위치한 국가들은 明代와 별 다름이 없는 ‘책봉’과 ‘조공’의 원리 위에서 청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를 담당하던 국가 기구도 明代와 마찬가지로 禮部였다. 때문에 지금까지 학자들은 理藩院과 藩部처럼 淸이 創案한 제도의 역사적 의의를 인정하는 한편, 동시에 조선을 포함한 동남 지역 조공국과 淸의 관계를 明代의 그것과 동일한 성격으로 인식해 왔다. 明-淸과 朝鮮의 약 500년에 걸친 관계를 ‘조공체제’(tributary system)의 ‘典型’으로 파악하였던 종래의 인식은, 적어도 조선과의 관계에 관한 한 明과 淸의 차이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明이 조선에 파견한 칙사의 명단을 정리한 근년의 연구 성과를 보면, 明이 조선에 파견한 칙사는 거의 대부분이 하급 관원이거나 宦官이었다(高艷林 2004: 193-200). 이는 본고의 고찰을 통해서 드러난 ㉠·㉡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인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과 ㉡는 적어도 칙사 파견에 관한 한 朝-淸 관계에는 朝-明 관계와 엄연히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 “有明朝鮮國”이라는 표현이나 “崇禎後紀元”의 광범위한 사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조선의 明에 대한 인식과 淸에 대한 그것이 실로 天壤之差를 보이고 있었다면, 淸의 조선 인식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明의 그것과 달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과 ㉡는 共時的으로 볼 때에도 淸代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의 위상을 재검토하는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淸代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조선의 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와 관련된 종래의 논의는 맨콜(Mancall)의 견해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맨콜에 따르면, 淸의 시각에서 그 주변 세계는 ‘동남 초승달’(the southeastern crescent) 지역과 ‘서북 초승달’(the northwestern crescent)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었다. 전자는 정주 농경사회로서 유교와 한자와 같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에, 후자는 유목사회로서 중국 문화의 영향이 약하였다. 전자에 속하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조선, 琉球, 베트남 등을 꼽을 수 있으며, 禮部가 이들과의 관계를 관할하였다. 반면에 후자는 理藩院의 관할이었다(Mancall 1968: 72-75).<sup>22)</sup>

禮部-농경사회와 理藩院-유목사회라는 맨콜의 ‘이원구조’는 학계에 광범위하게 수용되어 왔다(모테기 도시오 2004: 144-146; 平野聰 2007: 157-159). 그런데, 만약 淸이 조선, 琉球, 베트남 등을 동일한 범주의 국가로 인식하였다면, 본고의 고찰 대상인 칙사의 인선에서도 이들 세 나라는 동일한 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마침 禮部 관할의 많은 朝貢國 가운데 淸이 칙사를 파견했던 나라는 조선, 琉球, 베트남 등의 세 나라로 제한되어 있었다.<sup>23)</sup> 따라서 淸의 조선사행 인선에서 드러난 ㉠와 ㉡의 의미를 음미하고자 할 때 琉球와 베트남은 절호의 비교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淸이 琉球·베트남에 파견했던 책봉사의 인선에 관한 원칙은 조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嘉慶 □□欽定大清會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 무릇 冊封使는 모두 [황제의] 特簡을 받든다. ... 琉球와 越南[으로 가는] 正使와 副使는, 內閣典籍, 中書, 翰林院侍讀, 侍講, 修撰, 編修, 檢討, 六科給事中, 禮部郎中, 員外郎, 主事를 쓰는데, 먼저 奏請하여 各衙門에 儀도가 修偉한 滿·漢 各官을 뽑아 보내고 아울러 禮部の 滿·漢 司官을 가려 뽑도록 해서, 帶領하여 引見한 뒤 [황제께서] 簡用하시길 삼가 청한다.<sup>24)</sup>

22) 1984년에 출판한 저서에서 맨콜은 전자를 “the Maritime Crescent”, 후자를 “the Inner Asian Crescent”로 바꾸어 불렀고, 전자에서 조선을 첫 번째로 꼽았다(Mancall 1984: 131-158).

23) □□淸史稿□□ 卷93, 2722쪽.

이 기록에서 주목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사와 부사의 인선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둘째, 칙사 인선의 대상이 하급 관원이었다. 먼저 內閣의 典籍은 정7품, 中書는 종7품이었고, 翰林院의 侍讀과 侍講은 종5품, 修撰은 종6품, 編修는 정7품, 檢討는 종7품이었으며, 六科의 給事中은 정5품이었다. 禮部의 郎中은 정5품, 員外郎은 종5품, 主事는 정6품이었다(李鵬年 1989: 430-435). 셋째, 유구와 베트남에 파견하는 칙사의 인선에서는 滿洲와 漢人을 병용하였다. 이는 各衙門의 “滿漢各官”과 禮部의 “滿漢司官”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琉球·베트남에 파견되었던 칙사의 인선은 이 원칙과 부합하였을까? 먼저 琉球의 경우는 順治 11년부터 乾隆 20년까지 있었던 네 차례의 칙사 인선만을 대상으로 實錄의 인선 기록과 □□職官年表□□ 등을 대조하여 칙사의 출신을 확인해 보겠다. 順治 11년 7월 淸은 琉球로 파견하는 책봉 정사로 兵科 副理事官 張學禮을, 부사로 行人司 行人 王垓를 선발하였다.<sup>25)</sup> 順治 연간 六科의 副理事官은 八旗 漢軍 출신이었으므로(李鵬年 1989: 411). 張學禮는 漢人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하지만, 王垓는 山東 膠州 출신의 漢人이었다.<sup>26)</sup> 그러므로 順治 11년의 琉球 책봉사 인선은 관직에서는 (가)의 정례와 딱 들어맞지 않았지만, 滿漢을 가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정례와 어긋나지 않는다.

康熙 21년 칙사로 파견된 翰林院 檢討 汪楫과 內閣 中書舍人 林麟焜은 모두 漢人이었고,<sup>27)</sup> 康熙 57년의 칙사 가운데 翰林院 檢討 海寶는 鑲白旗 滿洲, 編修 徐葆光是 漢人이었다.<sup>28)</sup> 끝으로 乾隆 20년의 칙사 중에서 翰林

24) 嘉慶 □□欽定大清會典□□ 卷31, 13b-14a쪽.

25) □□順治實錄□□ 卷85, 順治 11년 7월 戊子, 667쪽. 단 이 두 사람이 실제 유구에 간 것은 강희 초였다(王士禛, □□池北偶談□□, 23쪽).

26) □□職官年表□□, 3137쪽.

27) □□康熙實錄□□ 卷102, 康熙 21년 4월 辛卯, 25쪽. 汪楫은 □□職官年表□□, 3162쪽, 林麟焜은 □□職官年表□□, 3180쪽.

28) □□康熙實錄□□ 卷79, 康熙 57년 6월 庚辰, 734쪽. 海寶는 □□職官年表□□, 3200쪽, 徐葆光

院 侍講 全魁는 鑲白旗 滿洲였고, 編修 周煌은 漢人이었다.<sup>29)</sup> 따라서 康熙 연간 이후 淸이 琉球에 파견한 책봉사의 인선은 칙사의 관직이나 출신 모두 (가)와 일치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는 베트남의 경우를 보자. <표 A>는 淸이 베트남(安南/越南)에 파견한 칙사의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sup>30)</sup> 康熙 5년과 康熙 8년에 파견된 칙사의 관직은 (가)에 열거된 것과 차이가 있지만, 칙사의 면면을 보면 程芳朝는 安徽 桐城 출신, 張易賁은 河南 盧氏 출신, 李仙根은 四川 遂寧 출신으로<sup>31)</sup> 오히려 漢人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康熙 22년에서 乾隆 2년까지는 관직과 이름만 보아도 (가)의 원칙이 충실하게 준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乾隆 26년의 경우는 正白旗 滿洲인 德保와 四川 華陽 출신의 漢人인 顧汝修가 칙사로 파견되었는데,<sup>32)</sup> 후자의 관직인 大理寺少卿은 (가)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었다.

<표 A> 淸이 安南/越南에 파견한 칙사

시기	정사		부사		비고
	관직	이름	관직	이름	
康熙 5년	內國史院侍讀學士	程芳朝	禮部郎中	張易賁	
康熙 8년	內秘書院侍讀	李仙根	兵部主事	楊兆傑	
康熙 22년	翰林院侍讀	明 圖	翰林院編修	孫 卓	冊封
	翰林院侍讀	鄔 黑	禮部郎中	周 燦	諭祭
康熙 58년	內閣中書	鄧廷喆	翰林院編修	成 文	

은 □□職官年表□□, 3198쪽.

29) □□乾隆實錄□□ 卷488, 乾隆 20년 5월 庚辰, 120쪽. 全魁는 □□職官年表□□, 3148쪽, 周煌은 □□職官年表□□, 3175쪽.

30) 淸이 安南/越南에 파견한 칙사의 관직과 명단은 山本達郎 1975: 592-593, 684-694에 정리된 내용을 참조하였다.

31) 程芳朝는 □□職官年表□□, 3235쪽, 張易賁은 □□職官年表□□, 3210쪽, 李仙根은 □□職官年表□□, 3165쪽.

32) 德保는 □□職官年表□□, 3263쪽, 顧汝修는 □□職官年表□□, 3284쪽.

시기	정사		부사		비고
	관직	이름	관직	이름	
雍正 12년	翰林院侍讀	春 山	兵科給事中	李學裕	
乾隆 2년	翰林院侍讀	嵩 壽	翰林院修撰	陳 倓	
乾隆 26년	翰林院侍讀	德 保	大理寺少卿	顧汝修	
乾隆 53년	兩廣總督	孫士毅	-	-	黎朝 昭統帝
乾隆 54년	廣西候補道	成 林	-	-	西山 阮文惠
嘉慶 8년	廣西按察使	齊布森	-	-	
道光 원년	廣西按察使	潘恭辰	-	-	
道光 21년	廣西按察使	寶 清	-	-	
道光 28년	廣西按察使	勞崇光	-	-	

한편 乾隆 53년 兩廣總督 孫士毅가 책봉사로 파견된 이후로는 京官이 아닌 지방관이 칙사로 파견되어 (가)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는 조선의 경우 道光 24년 이후 칙사 인선의 대상 관직이 변화한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孫士毅, 潘恭辰, 勞崇光 등은 漢人,<sup>33)</sup> 成林(鑲藍旗 滿洲), 齊布森(鑲紅旗 滿洲), 寶清 등은 旗人<sup>34)</sup>으로, 칙사의 인선에서 滿漢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4. 朝鮮使行의 人選 原理에 대한 검토

위에서 淸이 琉球·베트남에 파견했던 칙사의 인선 관련 정례와 인선 실태를 검토해 보았는데, 조선의 경우와 비교할 때 琉球와 베트남에 파견하는 칙사의 인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33) 孫士毅는 □□職官年表□□ 319쪽, 潘恭辰은 □□職官年表□□ 326쪽, 勞崇光是 □□職官年表□□ 3229쪽.

34) 成林은 □□職官年表□□ 316쪽, 齊布森은 □□職官年表□□ 3258쪽, 寶清은 道光 28년 刑部의 滿洲 左侍郎이었다(□□職官年表□□, 488쪽).

첫째, 琉球와 베트남에 파견한 칙사는 5품 이하의 하급 관원을 인선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琉球와 베트남에 파견한 칙사는 滿·漢을 가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淸이 조선에 파견한 칙사의 인선과 琉球·베트남에 파견한 칙사의 인선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셈인데,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의 인선 유형을 ‘조선형’, 후자를 ‘유구형’으로 부른다면, 두 유형의 차이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B> 칙사 인선의 두 유형: ‘조선형’과 ‘유구형’

유형	관 직	출신
조선형	3품 이상의 고급 관원	旗人
유구형	5품 이하의 하급 관원	滿·漢

두 유형의 차이로는, 첫째 ‘조선형’의 경우에는 3품 이상의 고급 관원을 인선 대상으로 한 반면 ‘유구형’의 경우는 5품 이하의 하급 관원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조선형’은 旗人 관료만을 인선 대상으로 하였지만 ‘유구형’은 滿漢을 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조선에 칙사를 파견할 때에는 漢人 관료가 배제되었던 반면에 琉球와 베트남의 경우에는 漢人 관료가 포함되었던 것이다.

이 양자의 차이를 낳은 ‘원리’를 명시적으로 밝힌 사료는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 차이가 그 어떤 ‘원리’로부터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단지 우연하게 이루어진 先例가 祖法의 墨守에 의해 반복됨으로써 관행으로 발전하고 그 관행이 다시 정례로 정착되었을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사행 인선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이미 정착된 정례에 대하여 道光 중기 이후 중대한 변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품 이상의 문무 관원 가운데 旗人을 칙사로 파견한다는 점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비록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淸의 칙사 인선에 모종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후술하겠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관직’의 차이보다는 ‘출신’의 차이가 칙사 인선의 ‘원리’를 논하기에